제198회 임시회
2002. 3. 27.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심 사 보 고

2002. 3. 27.
기획행정위원회

1. 청원일자 및 청원자

가. 청원일자 : 2002년 2월 21일(2002-1)

나. 제 출 자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노 영 우(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외 11개단체

2. 심사일정

○ 제1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02. 3. 22)

○ 검토보고, 심의의결

3. 소개의원 및 출석공무원

가. 소개의원 : 한 현 태 의원

나. 출석공무원 : 감사관 김 경 룡

4. 청원요지

○ 현재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1 (감사청구 주민수) 및 제3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위촉)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한바 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을 요구.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1이상
  ⇒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조정
  ※ 현행 1,050명

○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 9인의 위원 ⇒ 11인의 위원

◦ 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또는 임명

- 국장급이상 공무원, 감사관
  ⇒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 충청북도의회 의원 2인, 공익적시민단체 관계자 2인이상

5.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내 용

-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정하고,

-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심의위원 대상자도 도의원 2인,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으로 확대 요구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방안 및 행정자치부 감사 16800-31 (2002. 1. 23)호로 시달된 권고안 (청구인수 축소 : 광역 300명 내외, 기초 200명 내외)에 따라,

- 충청북도에서 2002. 2. 22일 충청북도 공고 제2002-59호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로,
집행부에 이송 동 조례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 김준석 위원(질문)

- 주민감사청구 시행 후 그동안 청구건수는?
감사관) 없음
- 주민감사청구가 없는 이유는?
감사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전화, 인터넷,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주열 위원장(질문)

-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구인수 축소 등 본 청원의 내용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의 조례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감사관) 이미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즉시 반영은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심 사 결 과 : 본 청원의 청구인수 축소 등 청원내용이 일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고 충청북도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충청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별첨

○ 의견서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의 견 서

제 목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의견

1. 청원요지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요구

- 감사청구 주민 수를 100인 이상으로 축소
-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대상자도 도의원 2인,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으로 확대 요구

2. 심사의견

○ 감사청구 주민수의 축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0이상 ⇒100인 이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심의위원회 구성의 확대는 아직까지 청구가 없어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도출 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따라서, 본 청원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도의회 차원에서 개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청구인수 축소 : 광역 300명 내외, 기초 200명 내외)에 따른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관련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집행부의 의견과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